

의안번호	제 137 호
의 결 연 월 일	2022년 월 일 (제 회)

2023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

제 출 자	충청북도교육감
제출연월일	2022년 11월 11일

2023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

의안 번호	137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22. 11. 11.

제출자 : 충청북도교육감

1. 제안이유

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23년도 충청북도 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 받고자 함

2. 주요내용

(단위: 천원)

기금명	'22년도말 조성액(a)	'23년도 기금운용계획		'23년도말 조성액 (d=a+ b-c)	전년대비 증감 (d-a)	융자금 미회수채권 (e)	연도말 총규모 (f=d+ e)
		수입계획(b)	지출계획(c)				
통합재정 안정화기금	842,901,180	26,839,534	0	869,740,714	26,839,534	0	869,740,714
적정규모학교 육성기금	86,669,547	13,300,000	9,652,336	90,317,211	3,647,664	0	90,317,211
교육시설환경 개선기금	334,977,634	235,190,016	0	570,167,650	235,190,016	0	570,167,650
합 계	1,264,548,361	275,329,550	9,652,336	1,530,225,575	265,677,214	0	1,530,225,575

3. 의안전문 : 별책(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)

4. 관계법령 발취 : 붙임

□ **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(기금운용계획)**

제8조(기금운용계획 및 결산)

-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,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-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·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.
-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늘리거나, 새로운 비목(費目)을 설치할 수 없다.
- ④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□ **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4조(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)**

제14조(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)

-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운용 성과를 분석하여야 한다.
-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운용 성과의 분석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시·군·구(자치구를 말한다)는 특별시장·광역시장 및 도지사를 거쳐서 제출하여야 한다.
-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제2항에

따른 분석결과를 확인·점검하여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되, 기금운용의 성과가 현저하게 떨어지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기금 운용의 성과 향상을 위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으며, 필요한 경우에는 그 확인·점검 결과와 권고의 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.

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운용 성과 분석결과와 제3항에 따라 통보받거나 권고받은 사항을 다음 연도 기금운용계획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